

포괄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또는 채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앞면 기재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채무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계약
2. 채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계약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법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공사가 아닌 때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의 대여가 아닌 때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이 아닌 때
5. 채무자등에게 건설기계가 인도되기 전이나 건설공사용 부품이 납품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
6. 개별계약이 보증기간 개시 전에 체결된 때
7.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8.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타보증기관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때

제3조(보증의 효력 발생) ① 보증의 효력은 개별계약의 정보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지된 후 조합의 심사를 거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개별계약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이하 "개별보증"이라 한다)이 확정·공시된 때에 발생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보증이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1. 채무자 등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시공 건설업 전부등록 말소,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 발생 이후에 개별계약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경우
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3. 개별보증의 보증기간 종료일이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4.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수수료가 부족한 경우
5. 보증채권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연대채무화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6.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개별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개별보증의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 기계대여, 부품 납품으로 발생한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채무자의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의 개별보증에 대하여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의무에 따라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1항의 인정되는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 또는 채무자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2. 개별계약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할인료 등의 이자 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시공, 대여 또는 납품 등으로 생긴 금액
4.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채무자등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건설공사용 부품중 시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품에 해당되는 금액

5. 대금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제5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 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개별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서의 효력상실) 개별보증이 확정된 이후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개별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개별보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해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대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대금내역 및 대금수령내용(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의 사실
4. 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거나, 당초 대금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
3.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 이해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징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사고 발생시 대금채권 인정기준) 제4조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대금채권 인정금액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기성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가 인정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인정금액은 개별계약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하여 채무자 등이 인수한 부품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건설기계 대여계약의 인정금액은 개별계약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등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사 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징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한 기성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수령한 확정기성금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